

## 대한설비건설협회

# 2002년도 추진사업 및 2003년도 사업계획

## [ 2002년도 주요추진사업 ]

### [건설진흥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가. 추진 경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2년 1월 26일, 법률 제 6640호)으로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저가하도급심사지침 활성화, 이중계약 처벌강화 등을 건의

#####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2002년 4월 25일)하고 의견 수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 심의를 거쳐 2002. 9. 18일 대통령령 제 1774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건설 교통부령 제332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이 개정되었음

#### 1)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법 제9조제4항, 영 제12조의2)

건설업 등록 후 3년 경과시 마다 갱신신고 하도록 하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경우는 1년마다 신고하도록 함

※ 건설업등록일 또는 갱신신고 수리일부터 3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신고하여야 함

※ 시행일(2002년 9월 18일) 당시 건설업등록일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시행일부터 7월이내(2003년 4월 17일까지)에 등록관청에 갱신 신고를 하여야 함

#### 2) 건설업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법 제9조의2, 영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중 대표자 등의 변

경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변경신청 의무사항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⑤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 건설공사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발주자에게 통보

※ 건설공사대장: 도급계약내용, 보증현황, 공사진척상황, 대급수령상황, 하수급인·시공참여자 현황(시행규칙 제21조)

※ 정보통신망(건교부장관이 고시, 11월경 시범사업 실시 및 고시에정)

•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2003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는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시행령 부칙)

4)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 조정

공제조합 운영건진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 구성원 조정

5) 권한의 위임·위탁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업무 등이 건교부장관 권한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전문건설업에 관한 시공능력평가업무 협회위탁

6)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 조정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종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내용을 조정함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보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자만이 시공 가능

7) 하도급계약내용 허위 통보시 처벌강화

수급인은 하도급계약내용을 발주자에게 허위 통보한 경우에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에 처하였으나,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으로 처벌내용을 강화함

8) 민간공사 허위실적 제출방지

민간공사의 시공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종전에는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었으나, 허위실적 제출방지를 위하여 실적증명서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공사의 인·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착공신고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9) 허위서류 제출시 시공능력평가방법 개선

• 시공능력평가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허위서류 제출시에는 시공능력평가

에 불이익을 주도록 함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허위제출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반영함

10)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공시

- 매년 2월 15일까지 신청 받도록 하고,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 ※ 재무제표는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 신청서류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사업관리실적, 전문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현황 등을 확인하여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시함
- ※ 현재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중이며, 추후 고시에정

11) 건설공사 표지 및 표지판 설치

- 공사진행 중 공사현장에 내걸어야 하는 표지형식을 정하였으며, 완공시에는 금속·석재 등으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

건설공사의 현황(표지)

-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기술자
- 공사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 ※ 규격은 건설공사의 내용, 공사현장의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는 일반건설업종이

할 수 있는 건설 공사로 하며, 공사명·발주자·감리자 등의 성명을 기재함

〈시행일에 관한 사항〉

개정법률의 공포일은 2002년 1월 26일이며, 공포 후 6월 경과한 날(7월 27일)부터 시행되나, 하위법령 개정지연으로 하위법령 개정필요부분은 하위법령시행일(9.18)을 동법령의 시행일로 볼 수 있겠으며, 부칙에서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면 될 것임

2. 기계설비공사 통합발주 요구에 대한 대응추진

가. 추진배경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허용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행정쇄신과제로 확정(1994년 4월)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단서조항 3호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신설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판단사항으로 허용(1994년 6월 30일)
- 우리 협회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장관 명의로 각 발주 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 시행(2000년 5월 24일)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 산하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 시행(2001년 3월 9일)
- 본회, 각 시·도회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노력으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확산

나. 통합발주 1차 요구 및 대응결과

- 대한건설협회는 재정경제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관련 질의공문 접수(2002년 4월 4일)

**[공문내용]**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사실 판단할 사항이지, 건설교통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계설비공사는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단정지어, 분리발주를 협조 요청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며, 유권해석 기관인 재정경제부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이를 시정 건의 (고문번호사 법률자문 검토)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우리업계 의견 제출
- 재정경제부에서 당초안 보다 많이 완화된 내용의 질의회신(2002년 4월 16일)
- 대한건설협회에서 건교부 및 교육부에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공문을 첨부하여 관련공문 시정 건의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공문(회제41301-483호, 2002년 4월 10일)에 대한 질의공문 발송(2002년 5월 13일)

**[질의내용]**

- 재정경제부 질의회신 공문을 근거로 대한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고 발주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 동 공문 내용 중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결정한 건설교통부 공문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발주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협조 요청한 사항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를 질의
- 민주당, 재경부, 건교부, 교육부 등을 방문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타당성 설명 ○재정경제부에서 대한건설협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관련 시정지시 공문 발송 및 우리협회에 회신(2002년 5월 20일)

**[질의회신 내용]**

- 재경부 공문 중 “적절하지 않다”의 의미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귀 협회(대한건설협회)에서 우리 부 공문을 왜곡·확대 해석하여 우리부 회신내용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

**다. 통합발주 2차 요구 및 대응결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질의(2002년 9월) : 우리 협회에서 작성한 세부자료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적법성 답변

**라. 통합발주 3차 요구 및 대응결과**

건설교통부 감사원 감사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기재58000-269, 2000년 5월 24일)의 타당성 제기(2002년 11월) :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 및 대응으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협조공문(기재58000-269, 2000년 5월 24일) 현행대로 유지

**마. 통합발주 4차 요구 및 대응결과**

한국통신에서 기계설비공사 통합발주 검토(2002년 8월) : 본회 회장단이 한국통신을 방문하고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유지 결정

**바. 통합발주 5차 요구 및 대응내용**

대한건설협회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사안별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협조요청한 건설교통부 공문(기재58000-269, 2000.5.24) 및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시설81470-90)은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한 건설교

통부의 의견을 질의(2003년 1월 24일)

- 본회 회장단이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우리업체의 의견 설명(2003년 1월 24일)
- 기계설비공사 통합발주 반대에 대한 탄원서 제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관련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건의(2003년 1월 29일)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 제출(2003년 1월 30일)
- 건설교통부 방문 및 분리발주 의견 설명(2003년 2월 3일)

### 3. 대한주택공사 옥내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2002년도 상반기 옥내기계설비공사 2건이 분리발주 시행

※ 계약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자
용인마평1공구 기계설비공사	2,2340,574,000	홍한개발(주)
남양주호평13블럭 기계설비공사	2,375,514,000	(주)동양 기계설비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개정

가. 추진배경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제도개선 건의
- 재정경제부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개정 추진

나. 추진결과

- 대통령령 제17688호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2002년 7월 30일)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8조 본문 단서 내용 중 분리발주에 부정적인 문구 “일괄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삭제

### 5.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자료 제작 안내

가. 추진배경

- 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홍보내용 개정 필요
- 각 시·도회의 요청에 따라 홍보자료 제작

나. 추진결과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자료 제작하여 각 시·도회에 송부

### 6.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고시

가. 추진배경

현행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수급인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형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미약하여 하도급심사지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건의

※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건교부 지침 2000년 6월 1일 관보고시)

- 하도급율이 82%미만인 경우에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
- 심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배점항목 등은 발주자가 조정가능

나. 추진결과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고시 근거) 신설 : 2002년 9월 18일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호로 2003년 1월 11일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을 고시

7.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적 조정

가. 추진배경

- 국가계약법령에 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정의 경우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위의 조항을 악용하여 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건축구조물과 동일하게 최고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자도 하도급자인 설비업체에게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요구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설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수차례 건의

나. 추진결과

재경부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각 공종별로 설정하도록 하고, 공정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계약법에서 정한대로 하자기간을 조정토록 각 발주기관에 회계통첩을 시달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홍보

가. 추진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지불제도가 건설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홍보

추진

-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79개 전국 주요 발주기관 및 감리회사(약 500개사)를 대상으로 안내공문 발송(2003년 1월)

[기술진흥사업]

1.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 개정 추진

가. 추진경위

표준품셈 신설 및 개정작업에 부응하여 설비공사업계의 실정과 현장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품셈의 개정이 되도록 대상항목에 대한 현장실사치 및 관계문헌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 표준품셈의 신설 및 개정을 추진함.

나. 추진내용

- 1) 2003년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 선정 (2002년 2월 8일)
  - 신설 및 보완 14개 항목(신설 13개, 보완 1개)
  - 우리 협회 현장실사 항목(4개 항목) : 적산열량계(☉ 32), 중앙처리장치(CPU), 콘솔 설치, 입출력장치(I/O EQUIPMENT)
- 2) 2003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항목 현장실사 추진 : 중앙처리장치(CPU), 입출력장치, 콘솔장치 현장실사
- 3) 2003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 건설협회에 제출 (2002년 10월 28일) : 적산열량계(☉ 32), 중앙처리장치(CPU), 입출력장치(I/O EQUIPMENT)

- 4) 2003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에 대한 심의
- 5) 2003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항목 각·시도회 안내 (2003년 1월 6일)
- 6) 2004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희망항목 조사 및 제출 (2003년 1월 10일) :에어챔버, 펌프류(37kW 이상), 가스용 강관배관, 가스용 후렉시블 매설배관

## 2.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능계기술자의 경력인정 및 관리 등을 본 협회에 '97년 10월 16일자로 위탁 시행토록함에 따라 기계설비분야 5년이상 건설공사 실무 기능공의 경력인정을 추진함.

## 3. 제10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건설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코자 추진함.

## 4. 산학협력 위탁교육 추진

기계설비공사업계에서 필요한 설비기술자 양성의 일환으로 '97년 4월 16일자로 서울산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대학 기계설비 학사과정, 대학원 최고전문가과정, 전문가과정 교육위탁을 추진함.

## 5. 자동제어설비공사 관련업무 추진

### 가. 추진경위

건설산업기본법상 기계설비공사의 업무내용중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업역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자동제어공사 업역 확대를 도모코자 추진함.

### 나. 추진내용

- 1)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업역 개정(안) 건의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수 및 자동제어업계 의견수렴 (3월 7일)
-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업역 확대 개정(안) 건의 (4월 2일) :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4월 25일)에 대한 수정 건의안 제출(5월 17일)
- 2)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간담회 (2002년 9월 4일) :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업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방안 강구
- 3) 자동제어공사의 업역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관련 간담회(2002년 10월 4일)

### [연구과제]

-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업역 정립
-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업역 정립

- 4) 기계설비 자동제어 공사종류별 분류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 연구용역기간 : 2002년 12월 1일 ~ 2003년 1월 30일(2개월)
- 연구기관 : 대한설비공학회
- 연구범위
  - 기계설비 자동제어 분류 및 현황분석
  -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실태분석 및 사회적 여건 분석
  - 기계설비 자동제어 공정별 분류 방안 제시

### 다. 추진결과

기계설비 자동제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교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업종별 업무내용중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범위 확대를 건의할 예정임.

## 6.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발간업무 추진

### 가. 추진경위

각 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표준화를 통하여 적정공사비 책정의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사예정가격 산출을 도모코자 추진함.

### 나. 추진내용

-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된 일위대가표 개선요청 내용을 토대로 자재 및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일위대가표를 전산처리하여 발행

## 7. 플랜트(산업)설비공사 관련업무 추진

### 가. 외국인산업 연수생 대상 확대 추진

#### 1) 추진경위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중 연수대상공사 범위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플랜트설비공사 건설인력난 해소를 도모함.

#### 2) 추진내용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개선 건의 : 건교부 건설경제과

- 건의내용 : 외국인 연수대상공사의 범위를 민간발주 플랜트건설공사 및 업무용 시설공사 확대 건의 (2002년 8월 26일)
- 외국인산업연수대상 공사범위 확대 의견 회신 : 대한건설협회(2002년 10월 31일)
- 300억 이상 민간발주 산업설비건설공사

### 3) 추진결과

외국인 산업연수에 관한 지침이 개정(2003년 1월 6일)되어 SOC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공사도 연수대상공사에 반영됨.

### 나. 플랜트산업 중장기 기술기반 확충 방안 연구 참여

향후 산업설비분야가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으로 정책방향·관련제도·업역 및 기술체계 등 현행 법규 및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플랜트산업 발전기반 확충을 도모함

### 다. 플랜트 건설현장 노임단가 적용 추진.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와 건설협회 합동으로 설비 건설현장의 임금조사를 추진하여 플랜트직종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를 현실화.

## 8. 신기술 지정 신청건 의견회신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의뢰한 신기술지정 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회신하여 건설기술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함.

## [가스진흥사업]

### 1. 시공감리수수료 인상에 따른 건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공감리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에서 30%인상을 전제로 승인을 득 하였기에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

- 추진 결과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의



건의를 일부 반영하여 12%을 하향 조정하였음.

**2. 건설기술자(시공관리자) 현장배치 기준 완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에 상용하는 기술자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도급자가 공사에정표상 명백히 현재 시공관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착공계 제출시 기술자를 배치토록 요구함에 따라 민원이 되어 왔음.

- 추진 결과 :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에서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개정하였음. (2002년 9월 18일)

**3.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자격 완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있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가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시공관리자로 배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등록기준이 흡수되면서 제외되어 민원이 됨에 따라 건의.

**4. 가스공사 분리계약 협조 요청**

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가스공사를 하도급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4항에 의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종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직접 계약하여야 하나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하지 않는 일부 전문건설업종에 통합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되어 왔음.

**5. 도시가스공급규정 중 공급전 안전점검 규정 폐지건의**

경기도청에서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2002년 3월 8일, 공업57254-1046호) 제13조(공급전 안전점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99. 2. 8, 법률 제 5,823호)으로 폐지된 『시공자 자체검사 제도』에서 규제하던 내용보다도 더욱 강제된 규정(모법에서 폐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특정인에게 중복 점검토록 하므로써 가스시공업계에 민원이 되어 건의함

○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공급전 안전점검)의 문제점

- 1)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시공자 자체검사 제도』를 규제하여 왔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고의로 자체검사에 입회하지 않거나 · 법령에도 없는 임의 자체검사 기준을 정하여 가스공급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 특정제품강매 · 불필요한 관련서류 요구 · 임의점검비용징수 등의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폐지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상주시공감리(완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가스를 공급판매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중복 점검토록 함은 국민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독점사업인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 하여 민원이 됨.
- 2) 가스공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해당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시공자시설 점검에 따른 점검원의 자격기준, 시공기준, 시설 · 장비, 민원처리기간 등을 규제하는 법령 및 감독기관이 없어 민원이 됨.
- 3) 타 시 · 도에서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승인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고있지 않으나, 이렇다할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일부 시 · 도에서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를 확

대 해석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민원이 됨.

- 4) 산업자원부(2002년 5월 20일 예안 57253-368호)에서도 서울시에서 건의한 『시공자의 자체검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회신공문을 받은바 있으며, 모법에서 폐지한 제도를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인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음. 또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부실시공에 따른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 없음.

○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현행규정

-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가스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4에 의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있음.
-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조잡 시공으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에는 8월의 영업정지 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

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기간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음.

-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관리를 한 시공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6)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시공기록 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시공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음.
  -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건의 내용

- 1) 위와 같은 문제점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 가스사업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법이 우선인 점을 감안 별도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3조(공급전 안전점검)내용을 폐지하여 민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따라서 공급전 안전점검은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의 의무사항임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자체적(시공자 제외)으로 점검토록 하여야 할 것임.
- 2) 참고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집단공급사업(LP가스탱크시설)에서는 도시가스사용시설보다도 사용압력이 높고 공기보다 무거워 도시가스시설 보다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으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만을 필하도록 일원화되어 있으며, 공급전 안전점검제도가 없음에도 가스사고사례 없음.

○ 추진 결과

산업자원부에서는 공급규정상의 공급전 안전점검 신청자의 주체 안전점검대상시설의 불명확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예정임을 회신 받았음.

6. 도시가스사업자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가. 추진 배경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사가 판매하는 특정 제품을 가스시공업계의 강매 하므로써 민원이 되어 왔음.

나. 추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사의 실사를 통하여 삼천리 및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자사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각각 5억4,000만원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

7. 가스관련 법령 및 관련자료집 인쇄·배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협회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인쇄·배포하였음

[회원관리·봉사사업]

1.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공시

가. 추진경위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5항「권한의 위임·위탁」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된 2002년도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별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업 등록수첩에 시공능력 기재업무 추진

2. 200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추진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현장을 합동으로 임금조사를 추진하여 기계설비관련 직종에 대한 시중 노임단가를 현실화

3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제재
-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시장(입찰등) 질서확립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건설업체를 감축

4. 2001년도분 설비건설업 통계년보 발간·배부

우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정부의 통계지정기관으로 지정('93. 12월) 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체 및 가스시설시공업체(1종)의 2001년도 건설 공사실적등을 집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회원사의 경영정책의 참고자료로 제공

5. 연도별 신규등록 발급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제3항에 의거 2002년도 신규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함

[정보화사업]

1.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운영추진

공공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의 조달정

보를 접할 수 있는 단일창구가 없어, 조달업체는 발주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수집에 따른 불필요한 노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 각 공공기관마다 입찰을 위한 업체정보를 따로 관리함에 따라 중복 관리로 인한 행정낭비발생 및 업체는 공공입찰의 참여를 위해 각 기관마다 따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발생. 따라서 조달청에서는 G2B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전략적 사고와 범정부적인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착수함

○ 기대효과

- ① 회원사의 경우 G2B에 1회 업체등록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 가능함
- ② 인터넷으로 On\_Line 처리되므로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됨
- ③ 관청방문 횟수 및 구비서류 감축 등으로 설비업계는 연간 80여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
- ④ 낙찰자 결정이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지므로 협회 전산입력자료의 중요성과 책임이 가중됨
- ④ 협회 회원사의 일반사항, 경영자료, 공사실적, 시공능력금액 등의 자료를 G2B시스템에 자동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일 1회 자동 발송함

**2. 2002년『실적신고 전산패키지』개발 및 운영 관리**

가. 추진경위

2001년 실적신고분부터 사용한 『실적신고 전산패키지』는 우리협회 회원사의 시공능력평가자료중 공사실적, 기술자현황, 신인도자료 등의 자료를 회원사가 직접 PC에서 전산작업하여 협회에 전산파일로 신고하는 운영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사용경험을 토대

로 기능추가 및 수정 보완개발하여 배포함

나. 추진결과

- 『실적신고 전산패키지』CD제작(4,300장) 및 회원사 무료배포
- 각시·도회별 실적신고 강습회(2002.12월)시 관내 회원사 전산패키지 사용교육실시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가. 전국 5,000여개사 2개 업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건설업영위에 관련한 회원사 기본사항, 행정처분사항, 실적사항, 통계 사항, 시공능력사항, 회비사항, 인정기능사관리사항 등의 전산처리, 데이터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보완 추진함

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시공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전산업무처리 관련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한 전산관리지침을 시행 추진함

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인서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계약 체결 및 인터넷 전용회선 교체

#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 [기본방향]

1.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발주기관에 분리발주의 장점을 홍보하고, 주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2. 설비건설업법의 제정을 위한 설비관련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비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설비건설업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3. 저가하도급에 의한 설비건설업계의 경영악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을 근거로 공공공사에서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민간공사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4.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문건설업종의 업종통합,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 조정, 하도급관련규제 완화 등의 건설정책에 대한 설비건설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한다.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직불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추진하며, 전국 발주기관 및 감리회사에 홍보를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6.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각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등록기준 미달 및 공사실적 미달 업체를 조사하고, 발주자에 대한 실적조치를 강화하여 허위로 공사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고발 및 시공능력 재평가를 실시한다.
7. 정부에서 위탁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우리협회 회원사의 시공능력평가자료, 실적자료, 경영상태자료를 정확하게 발주기관 및 원도급자에게 제공한다.
8. 설비 건설업계 정보교류 사이버공간으로서 운영해 온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자인 및 메뉴구성을 새롭게 재편성 개발 구축하여 협회 회원사 및 일반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인터넷 실적신고” 기반마련과 함께 정부가 지향하는 「전자정부」 실현에 부합토록 추진한다.
9.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가스시공 관련 법령의 제도 및 불공정행위 개선에 주력하여 가스시공업계의 위상정립과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10.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확대를 위하여 주요 분리발주현장에 대한 품질향상점검을 해당 시·도회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설비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회원사의 업역 확대를 추진한다.
11. 기계설비공사 적산기법 연구 및 표준품셈, 일위대가 개정보안을 통하여 적정공사비 책정과 설비건설업계의 채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12. 정부에서 위탁한 기능사 경력인증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우수기능 인력확보와 대학을 통한 설비건설기술자의 재교육으로 우수기술인력 확보 및 산학협력체제강화에 주력한다.
13. 기계설비 및 산업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제·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PL법 등 기술관련 법

령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설비공사의 품질 향상과 기술개발을 도모한다.

## [건설진흥사업]

### 1. 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사업에 주력

가. 전국 발주기관에 설비공사 분리발주 홍보 안내

나. 주요 발주기관 방문 및 분리발주 홍보

### 2. 설비건설업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추진

설비관련 법령의 조사 및 문제점을 연구하고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가. 설비건설업계의 실태 조사 및 현황과 문제점 파악

나. 설비업계의 의견 취합 및 설비건설업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 3. 건설생산체계 개선 연구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건설생산체계 개선을 연구

가. 건설업자의 업역간 겸업제한 및 업역 제한 사항 검토

나. 원·하도급 사항 및 의무하도급 사항 검토

다. 전문건설업종을 유사업종별로 통합사항 검토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지불제도 정착 추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와 하도급대금지불제도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추진

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추진

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직권 실태조사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위반자에 대한 현장실사 시행 조치 건의 추진

다. 전국 주요 발주기관 및 감리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및 하도급대금지불제도 철저 시행 건의 공문 시행

### 5. 건설공사하도급심사제도 시행 추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추진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공공공사에 적용토록 제도개선 추진

나. 전국 주요 발주기관 및 감리회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제도 홍보

### 6. 계약제도 개선 추진

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추진

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국가계약법령의 문제점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지방재정법령의 문제점 개선 추진

다. 조달청 등과 입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추진

### 7.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선 추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문제점 발굴 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추진

## [기술진흥사업]

### 1. 기계설비분야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업무 추진

정부의 위탁사업인 기능사경력인정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가. 연 2회 인정기능사 신청자 접수 및 심사
- 다.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

### 2.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공동 개최

- 가. 제11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공고 및 선수 추천
  - 경기직종 : 건축배관, 전기용접
- 나. 대회 운영요령 및 기능실기시험 안내
- 다. 시상 및 입상자에 대한 수혜내용 홍보

### 3. 산학협력 설비기술자 교육훈련 추진

설비건설업계의 기술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서울산업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설비기술인의 전문성을 제고

- 가. 기계설비 학사과정 개설 및 교육시행
  - 회원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규 4년제 학사 자격 기회부여
- 나. 기계설비 최고전문가·전문과 과정 개설 및 교육훈련 시행

### 4. 설비기자재 가격현실화 추진

설비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기준이 되는 설비기

자재 가격을 정부 공인 물가지에 적정가격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 5.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개정·보완 추진

기계설비부문 표준품셈과 일위대가표를 연차적으로 개정·보완하여 회원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지원

### 6. 기술정책 제도연구 및 개선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축법, PL법 등 기술정책 제도 개선 추진

### 7. 설비관련 시공기준 등 개정·보완 추진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설비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관련지침 등에 관한 내용을 연차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정·보완 하여 설비공사의 품질향상 추진

### 8. 설비공사 품질점검 추진

분리발주된 설비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기술지도 및 품질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분리발주를 계도

### 9.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현황 조사

기계설비공사사업의 업역 확대를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설비공사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을 통하여 설비업계의 이익창출 도모

### 10. 공중별협의회 개최 운영

플랜트설비공사협의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의 요구 사항 등 의견 수렴 및 반영

## [가스진흥사업]

### 1. 가스관련법령제도 연구 및 개선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시공관련 제도 및 관련고시를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 가. 도시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연구검토 후 문제점 개선 추진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연구검토 후 문제점 개선 추진
- 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연구 검토 후 문제점 개선 추진
- 라. 시공감리수수료 및 완성검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 추진.
- 마. 도시가스표준시방서 활성화 방안 추진.
- 바. 시공감리업무에 따른 문제점 제도개선 추진.
- 사.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범위 개선 추진.
- 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 추진.

###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내용을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3.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불공정행위 개선 추진

- 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정물품 강매 근절을 위한 개선 추진
- 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한 업무나 과도한 서류제출요구 및 가스

### 공급지연행위 개선 추진

### 4. 가스설비관련 표준품셈 개정보완 추진

정부표준품셈 개정내용과 설계도서 및 현장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회원사에서 적정공사비 책정을 도모코자 추진함.

### 5. 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산업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학회, 언론사 등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및 강습회에 참여하여 발표내용을 토대로 가스시공관련 기술정보수집 및 회원사에 안내.

### 6. 강습회 개최

가스관련법령, 시공감리업무 및 검사업무에 대한 규정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 가스시공업회원사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함.

### 7. 가스관련법령 개정 자료집 인쇄·배포

가스시공과 관련된 각종 법령개정내용 및 질의해설집 등의 자료 책자를 가스시공업회원사에 인쇄·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므로써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 8. 가스시공실무연구회 운영

가스시공실무연구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 시 개회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연구검토 정부에 제도개선 추진.

### 9.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운영

가스설비공사협의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 시 개회하여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정부에 제도



개선 추진.

균 5,000만원 미만)등 부실건설업체 자료 관계 기관에 제공

##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 1.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위탁 업무인 설비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신고 등의 처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 가. 업체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실적신고 강습회 실시
- 나. 공사실적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허위신고 미연에 방지
- 다. 2003년 시공능력평가·공시 및 건설업 등록수첩에 기재
- 라. 시공능력 평가자료를 회원사, 유관기관 및 발주처에 제공

### 2.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기계설비관련 직종에 대한 노임단가를 현실화하여, 공사비가 적정 계상 될 수 있도록 추진

### 3.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

건설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부적격업체의 증가로 인한 수수질서 문란 및 공사품질 저하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협조 추진

- 가.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건설기술자) 충족토록 홍보
- 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공사실적미달(2년 연평

### 4. 건설공사 기성실적 실태조사 추진

감사원에서 정부조달구매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건설업체가 기성실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시공하지 아니한 공사 등을 협회에 신고하여 시공능력을 과다하게 평가받거나, 적격심사(PQ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최근 3년간 매출액보다 시공실적이 많은 업체 중 110%를 초과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공사실적 실태조사 추진

- 가. 신고한 기성실적에 대하여 발주자 확인 등 일제 조사 추진
- 나. 과다신고 금액은 입찰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삭감조치
- 다. 고발 및 부정당업자제제 요청 등 고의성에 따라 조치

### 5. 2002년도분 통계연보 발간

- 가. 통계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설비건설업의 통계조사 업무를 확충 발전
- 나. 2002년도분 설비건설업체의 계약실적, 기성실적 등을 공종별, 계약방법별, 공사규모별 등으로 분류하여 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회원사의 경영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

### 6. 2003년도 전국 회원명부 발간

기계설비공사업체 및 가스시공업체(1종)의 홍보와 더불어 회원사, 유관기관 및 발주처의 자료로 활용토록 회원명부를 발간·배포

7. 기타 회원봉사사업

- 가. 회원사 애로사항 및 업무지도
- 나. 일반건설업체 부도시 회원사 보호업무 지원 강화
- 나. 각종법령, 제도 및 고시 등 안내
- 다. 무등록업자 시공근절 협조 및 홍보 지도
- 라. 과당경쟁 덤핑자제 촉구 등 건전 거래 확립제도

8. 회원봉사관련 소관위원회 운영

업계의 품위보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포상·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윤리위원회를 개최

[정보화사업]

1.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발(Renewal) 및 활용 극대화

- 가. 홈페이지 운영 3년 차로 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편성 및 협회 이미지를 부각시킴
- 나. 현재 일평균 조회수가 1,000여 회에 이르고 있으며, 회원사 및 사용자의 활용편의성을 강화하여 대내외 자료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집중화함
- 다. 현행 실적신고시스템을 웹기반으로 하기 위한 기초조성
- 라. 협회 통신비 절감 및 인터넷 광고수수확대

2.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자료제공 업무 추진

- 가. 협회 회원사의 경영자료,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일반사항자료 등을 G2B시스템에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자료제공을 함
- 나. G2B시스템 자료연계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서버관리

다. 2002 회계년도 기준 경영상태평균비율 산정을 위한 분석 및 발표

3.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가. 전국 5,000여 개사 2개 업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체의 기본사항, 행정사항, 실적사항, 통계사항, 시공능력사항, 회비사항, 인정기능사 관리사항 등의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 나. 현재 수작업 되고있는 건설업체의 실적신고서류관리업무중 접수, 평가조사일반현황작성, DM작업 등의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시공능력평가공시, 공사실적확인, 적격심사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다. 협회 전산시스템(서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관련단체와의 전산기술공유 및 유대강화

[기획·관리사업]

1. 협회 발전계획 수립

협회의 기능활성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 가. 협회기능 활성화
- 나. 시·도회 활동지원 및 조직강화
- 다. 정부 위탁업무개발 및 수용태세 강화
- 라. 조직활성화를 위한 협회의 제규정 개정
- 마. 협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심벌마크 및 로고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합리적 운영관리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사업성과의 극대화와 예산낭비억제

- 가. 사업심사 분석실시
- 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적정 집행유도

3. 회의운영

- 가. 총회(정기, 임시) : 사업계획, 예산, 결산, 정관변경 등 의결
- 나. 이사회(수시) : 주요업무 집행계획, 규정의 제정, 개정 등 의결
- 다. 시·도회장 회의(수시) : 업계 현안문제 협의
- 라. 기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수시)

4. 해외협력추진

설비건설업계의 해외진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설비건설관련 단체와 국제협력 양해각서체결 및 상호교류체제 구축

- 가. IFAWPCA 준회원 가입(1994), 정보교환 유대관리
- 나. 양해각서 체결국가와 업계간 유대강화
- 다. 기타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설비건설제도 정보수집

5. 2003년도 건설진흥축진대회 개최협조

건설진흥축진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개최(2003년 6월 예정)

- 가. 우리 협회를 포함한 건설관련 17개 단체가 주관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
- 나. 건설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

6. 유관단체 유대관리

설비건설 유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금 협조

- 가. 기계설비협의회(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기계설비엔지니어링연합회)

- 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설관련 17개 단체)
- 다. 대한설비공학회
-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설비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협회)
- 마. 한국건설CALS협회
- 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홍보사업]

1. 월간 “설비건설” 발간·배포

- 가. 발행부수 : 매월 5,000부
- 나. 배 포 처 : 회원사, 일반종합건설회사, 주택사업자, 설비·설계용역회사, 건설관련기관 및 관련단체, 설비관련기자재회사 등
- 다. 주요수록내용 : 협회소식, 회원사소식, 법령개정 및 건설관련정보, 신기술·신공법 소개, 해외기술정보 등

2. 대내·외 홍보강화

- 가. 대외기관에 대한 홍보 : 국내 일간지 및 건설관련전문지 등 언론기관에 협회 활동상황 및 협회 업무추진상황 보도자료 배포
- 나. 회원사에 대한 협회 추진업무 홍보